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4. 28.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3. 23. 김경이 의원 외 8명 (의안번호 584호)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4. 1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용품·잡화 등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희석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사업 (안 제6조 및 7조)
-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및 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사전협의 : 의약과
- 입법예고 기간 : 2026. 3. 27. ~ 2026. 4.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조례의 제정 목적(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 개선) 및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마약류 용어를 상품명에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함.
- 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상품명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실태조사), 안 제7조(사업)
 -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함.

○ 안 제8조(위탁),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28.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4.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87호)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가칭) 「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복지분야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질 높은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 ※ 25개 자치구 40개 노인종합복지관 모두 위탁 운영 중
-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대상자 맞춤 서비스 가능
-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대

○ 위탁사무 내용

-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 지역사회활동(어르신 사회활동, 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위탁개요

- 위 치: 동선동4가 342 외 2필지 * 동선2주택재개발구역 내
- 규 모: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2,837.63㎡(대지면적 710.47㎡)
- 개관일: 2027. 03월(예정) *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 현황사진 및 위치도



- 시설현황

층 별	주 요 용 도	면 적 (공용면적 포함)
합 계		2,837.63m ²
지상6층	• 경로식당, 조리실, 영양사실, 카페라운지	366.84m ²
지상5층	•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건강상담실	366.80m ²
지상4층	• 프로그램실(2개), 서예실, 장기바둑실, 사회교육사무실	378.80m ²
지상3층	• 다목적강당, 휴게라운지	378.80m ²
지상2층	• 통합사무실, 관장실, 일자리상담실, 회의실, 문서고	403.19m ²
지상1층	• 주차장(12대), 부출입구	395.34m ²
지하1층	• (주출입구) 안내데스크, 상담실, 정보화교육장	365.12m ²
지하2층	• 기계실, 전기실	182.74m ²

- 위탁예산: 1,768,781천원(시비 55% , 구비 45%)

· 인건비: 1,460,089천원(25명 12개월분)

· 운영비 및 사업비: 308,692천원

※ 2027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기간: 2027. 01. 01. ~ 2031. 12. 31.(5년)

* 공사일정에 따라 협약체결일 조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2026. 06.~07.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결정 2026. 09.

- 위·수탁 협약 체결 2026. 10.

- 민간위탁[개관준비] 2027. 0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라 한다) 제5조1)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 수	위탁기간	'27년 사업비 (천원)
		대지	건물			
가칭)구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동선동4가 342 외 2필지 (동선2주택재개발구역 내)	710.47	2,837.63 (지하2층/지상6층)	25명	'27. 01. 01. ~ '31. 12. 31. (5년)	1,768,781 (사비 55%, 구비 45%)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³⁾ 및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5년간 위탁할 수 있음.
-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7.(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 4. 28.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4.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89호)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개소일
					협약기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호점	일반형	아리랑로 27-3, 2~3층 (동선동)	149㎡	30명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21.09.01
					2021.09.01~2026.08.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0호점	일반형	종암로25길 29, 2층 (종암동)	168㎡	30명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21.09.01
					2021.09.01~2026.08.31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지원예산 : 연간 200,000천원 내외
 - ※ 인건비(센터장 및 돌봄교사), 운영비 및 급식비 포함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라 한다) 2개소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6. 8. 31.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키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키움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 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개소일
					협약기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호점	일반형	아리랑로 27-3, 2-3층 (동선동)	149㎡	30명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21.09.01
					2021.09.01~2026.08.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0호점	일반형	종암로25길 29, 2층 (종암동)	168㎡	30명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21.09.01
					2021.09.01~2026.08.31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⁵⁾에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키움센터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구의회 동의 후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⁶⁾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고,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